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722

발의연월일: 2022. 8. 1

발 의 자:서영교・신정훈・양기대

유정주・윤준병・이개호

이용빈 · 임오경 · 임호선

전혜숙 · 최인호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지속적인 농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

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202 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 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 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2027년 12월 31일--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은)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_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등의	농어업	관립	년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		
				12월
2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 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3. (생 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지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이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u>2027년 12월</u>
<u>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7</u> 년
12월 31일